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18

발의연월일: 2020. 8. 3.

발 의 자:조응천・박상혁・안규백

박홍근 • 이탄희 • 정일영

신동근 · 최인호 · 김병욱

장경태 · 한병도 · 기동민

임종성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우수한 경찰공무원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입법 당시 지역 출신이나 충원이 어려운 기술계 직종의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 선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실제 국가직은 실효성 미비로 2004년 이후 중단되었고, 지방직은 일부 지자체에서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편법운영하거나 지자체 단체장의 인사청탁 수단으로 악용되어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됨

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제3항제5호 삭제).

법률 제 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규채용) ①・② (생 략)	제8조(신규채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	
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	
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	
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	
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	
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	
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	
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	
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u><삭 제></u>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	
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u>경우</u>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